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104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3867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기 전인 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없었다면, 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빌라 제1층 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 28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7.2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84.9분의 36.01

